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음 1월 25일) 제34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아시아 보스턴' 도전

자치도, 산업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제출 비전·전략 수립, 전주-익산-정읍 등 '삼각벨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방산에 이어 바이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

핵심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구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자치도가 보유한 차별화된 강점과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 산업은 고령화와 삶의 가치 변화·환경오염·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대두되고, 연구기술 기반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기반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의 비전과 △오가노이드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초격차 기술혁신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지원 클러스터 고도화 △인재양성 정주까지 통합 연계 지원 등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장기기반

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하거나 재가공해 만든 장기유사체를 의미한다. 대체로 신약개발 및 질병치료, 인공장기 개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최대 바이오 소재 DB를 바탕으로(미생물, 농식품 등 총 56만종) 지역에 밀집된 △국내 최대 바이오 연구·혁신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27개), △양·한방, 의약 등 풍부한 병원연관 인프라(삼남병원 2개,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를 활용한다면 정밀재생의료산업 분야의 선도기술을 포함한 서비스, 활용기술에 대한 응용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넥스트앤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JBK LAB, (주)레드진 등 오가노이드 분야 선도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재공정부터 중간재·제품 생산, 의약품생산, 정밀재생의료산업까지 이어지는 기술축진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바이오 산업의 핵심 축인 전주-익산-정읍을 연계한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판교와 오송, 대전을 연계하는 재생의료산업의 공급 및 가치사슬을 조성한다.

삼각벨트는 여의도의 4.7배 규모인 1,572만㎡로, 전주는 오가노이드 기반

의 소부장 산업과 축진지구로 육성한다.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 첨단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성장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거점별로 클러스터 완성도를 제고해 전북을 미국의 바이오 심장인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차세대 재생의료산업의 국가 거점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전문인력양성 기반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특화·연관분야 고용을 창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특화단지 유치 열라이언스를 구성하고 하버드대, MIT, KIST 유럽연구소, 웨이코프레스트 등 글로벌 대학 및 바이오 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943.25억원(국비 5,433.95·지방비 3,191.55·민간 317.75)을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기업유치, 창업지원 등에 투입해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10여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평가와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새 학기 첫날인 4일 전주양현초등학교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해주고 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 축하합니다'

서거석 교육감, 새 학기 첫날 전주양현초 방문 학부모 간담회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서거석 교육감이 새 학기 첫날인 4일 전주양현초등학교를 찾아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입학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을 교문 앞에서 맞이하며 환한 학교생활을 응원했다. 입학식 후에는 학부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전주 혁신도시 내 60학급 규모의

전주양현초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다.

전북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으로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효천지구 내 7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1~2학년 교실에 학생 수 20명 배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7개 학교 가운데 전주양현초와 전주은빛초, 전주만성초 등 3개교에 유유 공간이 확보되면서 올해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가능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된 신입생들의 입학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52시간제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헌재,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는 합헌"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관련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각

"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입법 목적 정당해…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성 더 커"

최저임금법 제8조 1항 등 관련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침해하지 않아" 각하 처분

앞서 청구인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된 근로기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입법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상한제는 헌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입법자가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